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238

발의연월일: 2020. 7. 21.

발 의 자:진성준・윤준병・강선우

이인영 · 이형석 · 정청래

홍익표 · 최종윤 · 진선미

전혜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등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20년 단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현행의 교통 소통 및 편의 중심의 체계와함께 환경친화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통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의 규정에 '온실가스'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 도시교통체계로의 전환을 모색 하기 위한 것임(안 제2조제11호 신설,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 항제2호사목).

법률 제 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효율적"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온실가스"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진을"을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 전·관리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사목 중 "환경친화적"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 제1조(목적) |
|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 |
| 교통체계를 <u>효율적</u> 으로 운영· | <u>효율적이고 환경친화</u> |
| 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 <u> 적</u> |
|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 | |
|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11. "온실가스"란 「지속가능 |
| |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3 |
| | 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 |
| | <u>다.</u> |
|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 |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 |
|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 | 고시) ① |
| 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 | |
| 편의의 <u>증진을</u> 위하여 다음 각 |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 |
|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 | <u>전·관리를</u> |
| 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
| 수립) ① (생 략) |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 2 |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권역 안의 다른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인근지역과의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

가. ~ 바. (생 략)

사. <u>환경친화적</u> 교통체계의 구축

3. (생략)

③ ~ ⑧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 2 |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
| 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
| 을 통한 환경친화적 |
| |
| 3 (혀해과 간은) |

③ ~ ⑧ (현행과 같음)